

	친화회 회칙	제정일	1981. 6.26
		개정일	2020. 3. 6
		개정차수	25차
		담당부서	친화회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친화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자격) 본회는 동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을 회원으로 한다.

제 4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동서울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임 원

제 5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8. 7.25)

회장 : 1인 운영위원 : 30인 이내 감사 : 2인

간사 : 7인(총무 1인, 경조 4인, 대부 1인, 회계 1인)

제 6조 (임원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은 각 부서 및 학부(과)에서 추천된 회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7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되고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은 본회 업무를 심의 집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의 실무를 담당 처리한다.

가. 총무간사 : 회무기획, 집행, 회의(소집)통보, 서기, 기타 회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회의록 작성 보급, 각종 회무자료 보관)

나. 경조간사 : 본회 경조회무 집행(경조 집행 전표 작성)

다. 대부간사 : 대부업무 집행(대부신청 접수, 대부전표 작성, 이자수입 전표작성, 장부정리)

라. 회계간사 : 회비, 입회비 수입 및 각종지출 사무집행

④ 감사

가. 감사는 매년 결산감사를 시행하고 특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감사는 전항에 관하여 부당 또는 부정한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감사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될 수 있다. 단, 결원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임기로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9조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구분) ①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심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회칙의 개정 및 수정
- ②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③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 ④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본회 운영상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2조 (회의 정족수)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① 총회에 부의할 사항
- ② 총회 결의 사항 중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 ③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정족수 의결에 관하여는 제12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입회비, 회비,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7조 (회비납부) ① 회원은 다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월회비 : 12,000원 입회비 : 30,000원

② 운영비의 부족이 있을 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연도 결산) 본회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익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친화회 운영

제19조 (대부) 회원에게 자금을 대부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① 회원의 선정 : 회원이 대부를 신청할 때에는 미상환 대부금 전액을 상환해야만 신규대부를 받을 수 있다.
- ② 회원의 2인 이상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하되, 대부신청인과 연대보증인의 재직연수를 합쳐 7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연대보증인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채무자는 회원 중에서 연대보증인을 다시 입보하여야 한다.
- ③ 응자액은 1,000만원 까지로 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근무일이 1년 이내일 경우 200만원, 2년 이내일 경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7.25)
- ④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과 이자 분할납으로 하며, 중도 일부상환과 일시상환을 할 수 있다. 단, 원금은 매월 10만원 이상 상환하여야 한다.
- ⑤ 원금과 이자의 분할 상환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 ⑥ 이자율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생활자금대여 이자율에서 0.5%를 더한 것으로 한다. 단, 이자율의 변경 시점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정하고 변경 월의 익월 급여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 7.25)
- ⑦ 회원의 자격상실로 발생한 퇴직위로금은 회원의 동의가 없어도 미상환 대부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수익사업)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출자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운영은 별도 회계로 하고 이익금은 회원에게 배당할 수 있다.

제21조 (퇴직위로금) 회원으로서 퇴직할 때는 다음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text{친화회 순자본액} \times \frac{\text{자기월수}}{\text{전회원 총월수}} + (\text{월회비} \times \text{당해결산이후 불입월수})$$

제22조 (친목회 개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친목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7 장 경 조 운 영

제23조 (축하금 및 위문금 지급) 회원 중에서 경사 또는 상고가 있을 시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하금 또는 위문금을 지급한다.

- ① 경사에는 다음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가. 본인결혼 : 300,000원	나. 자녀결혼 : 200,000원
다. 부모, 배우자회갑 : 300,000원	라. 본인회갑 : 500,000원
마. 장인, 장모, 시부모회갑 : 300,000원	

단, 정년퇴직 할 때까지 회갑이 되지 않은 회원에게는 정년퇴직 할 때 본인회갑과 동일한 축하금을 지급한다.
- ② 상고에는 다음의 위문금을 지급한다.

가. 부 모 상 : 500,000원	나. 배우자상 : 500,000원
다. 자 녀 상 : 400,000원	라. 장인, 장모, 시부모상 : 500,000원

마.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상고 시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친화회 명의로 하되, 본인(본인 사망 시 제외)의 의사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조부모상은 부모상 위문금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7. 5.10)

③ 상가에 컵, 접시 등 소품을 제공한다. (개정 2007. 5.10)

④ 축하금과 위문금의 청구시효는 사유발생일 현재 본회 회원이며,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신설 2014. 5.21)

⑤ 빈소가 수도권 외 지역에 마련되어 있을 경우, 조기 및 상조물품 전달 방법을 수도권은 경조간사가 전달하고 그 외 지역은 해당학과 및 부서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 비용은 충청권 5만원, 그 외 지역은 10만원 비용을 조기 및 상조 물품을 전달하는 당사자에게 지급한다.(신설 2019.4.17.)

제24조 (특별위문금 지급) ① 회원 중 불의의 재난이 있을 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원 사망 시는 정회원 중 호봉제 교직원은 본봉의 3.5%, 연봉제 교직원은 본봉의 2%(조교 포함)를 공제 (단, 1,000원 미만 절삭)하여 특별위문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2.20.)

② 단체의 장(총장)으로 재직하는 분의 회갑에 한해 행운의 열쇠(금10돈)을 선물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③ 회계간사에게는 년 350,000원의 교통비를 월단위로 분할 지급한다. (개정 2014. 5.21)

④ 경조간사에게는 조사 1회당 30,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단, 30,000원 초과 시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5.21)

제25조 (회원의무)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26조 (회원탈퇴) 회원의 탈퇴는 개인 의사에 따르기로 하며 1개월 이내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 탈퇴 이전에 친화회 경조운영에 대해 수혜를 받았을 경우, 수혜 부분을 회수한다. (신설 2020. 3. 6)

제 8 장 보 칙

제26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